졸업논문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1976. 3. 1.
제8차 개정 2019. 06. 25.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46조에 의한 졸업논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논문 제출자격) 졸업논문 제출자격은 최종학년에 재학하는 자로서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졸업사정 시까지 졸업기준(취득학점 및 교과과정 이수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하 "졸업예정자"라 한다)라야 한다.

제3조(졸업논문의 대체)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학과)의 특성에 따라 졸업종합시험, 졸업작품발표 및 실험・실습보고, 외국어능력시험, 외부자격증 등에서 택1하여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2.2.6, 2002.8.19)
② (대체승인) 외국어능력시험 및 외부자격증 대체인정에 따른 사항은 해당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시행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2.8.19)
③ 공학교육인증과정 이수자는 공학교육센터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항 신설 2012.11.16)

제4조(졸업논문 작성계획서 제출시기) ① 졸업예정자는 4월 30일까지 졸업논문의 주제, 논문의 구성요지 및 참고문헌 등을 기재한 졸업논문작성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후 소속 전공주임교수(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졸업논문 작성계획서는 졸업논문 지도교수의 심사를 받아 해당 전공주임교수(학과장)가 확인한 후 5월15일까지 학장에게 보고한다.
(조 개정 2002.2.6.)

제5조(졸업논문 지도교수배정) ① 전공주임교수(학과장)는 해당 전공(학과) 전임교수 중에서 졸업 논문 지도교수를 1학기초에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전공주임교수(학과장)는 확정된 졸업논문 지도교수 명단을 지체없이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배정된 지도교수는 1개월 이내에 졸업논문 지도과정에서 논문의 주제와 방향을 전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전공주임교수(학과장)에게 보고하고, 전공주임교수(학과장)는 해당 학생에게 졸업논문계획서를 재 제출하게 한후 졸업논문 지도교수를 재배정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02.2.6)

제6조(졸업논문 제출시기)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을 지정된 규격 및 양식에 맞추어 10월말(후기졸업자는 5월말)까지 졸업논문 지도교수를 거쳐 소속 전공주임교수(학과장)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신설 2010.11.23)
② 졸업논문 제출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0.11.23)
(조 개정 2002.2.6)

제7조(졸업논문작성 및 지도) ① 졸업논문은 개인연구를 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공동연구를 할 경우에는 각자의 연구분야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② 논문의 체제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외국어로 된 논문은 국문요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표 지(아트지 A4 규격)
2. 목 차
3. 본 문
4. 참고문헌

③ 논문의 작성은 컴퓨터(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매당 950자 분량(줄은 21행)으로 작성하되 인문사회과학대학・경상대학은 17매 이상, 생명자원과학대학・이공과대학・예술체육대학은 8매 이상으로 하며, 용지의 여백 및 줄간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쪽여백 3 cm

2. 아래쪽여백 2 cm
3. 좌우여백 2.5 cm
4. 줄간격(본문내용에 한함) 0.7 cm
5. 꼬리말 여백(줄간격은 제한없음) 2.5 cm

④ 졸업논문 지도교수는 제출된 졸업논문 작성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제의 설정, 자료의 수집, 이론의 전개, 논문작성요령등 논문작성의 전과정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졸업논문 심사위원 위촉) 제출된 졸업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해 학장은 해당 전공주임교수(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소속전공(학과) 전임교수 중에서 3인 이상의 졸업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2.2.6)

제9조(졸업논문 판정 및 기준) ① 졸업논문 심사위원은 심사의 결과를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② 졸업논문심사의 기준은 주제를 포함한 당해 학문분야의 기초지식을 체득하고 주제에 관한 이론을 이해하고 수집한 자료를 체계화하여 이론을 전개한 능력이 표현된 것을 합격으로 하되, 심사한 성적의 평균치로서 판정하고 평균성적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 졸업논문 심사위원은 필요시 논문이 입력된 디스켓의 제출을 해당 졸업예정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졸업종합시험의 관리 및 성적평가) ① 졸업종합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학장은 해당 전공주임교수(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소속 전공(학과) 전임교수 중에서 3인 이상의 졸업종합시험 관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2.2.6)

② 졸업종합시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당해 전공주임교수(학과장)가 해당 학장의 승인을 얻어 시험실시 1개월전(추가 시험은 15일 전)에 공고한다. (개정 2002.2.6)

③ 졸업종합시험은 매년 9월-10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응시자 및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해당 전공주임교수(학과장)가 당해 학장의 승인을 얻어 11월 이내에 추가시험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2.2.6)

④ 시험과목은 각 전공(학과)의 전공과목내에서 4과목 이상 출제하며, 각 시험과목당 시험시간을 60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2.2.6)

⑤ 성적채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50점 이하를 낙제과목으로 하고, 성적평가는 전과목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1과목이라도 낙제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⑥ 각 학과에서는 필요할 경우 학과 자체적으로 졸업시험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항신설 2005.12.12)

제11조(졸업작품발표의 심사 및 성적평가) ① 졸업예정자는 전공(학과)의 특성에 따라 졸업작품발표로 졸업논문을 대체하며, 작품분야별 전시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12.12)

② 졸업작품발표의 심사 및 성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학장은 해당 전공주임교수(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소속 전공(학과) 전임교수 중에서 3인 이상의 졸업작품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2.2.6)

③ 졸업작품발표에 관한 사항은 당해 전공주임교수(학과장)가 학장의 승인을 얻어 졸업작품발표 1개월 전(추가졸업 작품발표는 15일 전)에 공고한다. (개정 2002.2.6)

④ 졸업작품발표는 매년 9월-10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졸업작품발표자는 소정 기간 내에 전공에 따라 2점 이상의 작품을 제출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속 전공(학과)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2.2.6, 2005.12.12)

⑥ 작품심사는 각 심사위원 평가한 성적의 평균치로 하되 성적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12조(졸업논문심사 결과보고) 전공주임교수(학과장)는 졸업논문심사(졸업종합시험, 졸업작품발표, 실험·실습보고, 외국어능력시험, 외부자격증)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11월 말일까지 심사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장에게 보고하고, 학장은 이를 지체없이 총장(교육연구처 학사운영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논문 또는 작품은 소속 전공주임교수(학과장)가 5년간 증빙자료로 보관한다. (개정 2002.2.6, 2002.8.19., 2003.11.21., 2019.06.25)

제13조(졸업증서 및 학사학위 수여) 졸업논문심사에서 합격한 자에게는 졸업증서와 해당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4조(졸업논문 불합격자에 대한 구제와 학위 수여시기) ① 졸업논문 불합격자는 불합격 판정일

로부터 2년이내(군입영 휴학기간은 제외)에 2회에 한하여 졸업논문을 재 제출할 수 있으며, 재 제출 할 때에는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 졸업논문을 재제출하여 합격하였을 때에는 졸업논문 심사결과 보고에 준하여 처리하되, 학위수여 시기는 재 제출 학기를 졸업일로 한다.
③ 졸업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치 않고 수료증만 수여한다.

부칙
(1)(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 본 시행세칙은 1977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9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4학년도 졸업예정자는 제7조(졸업논문작성 및 지도) 제3항의 개정세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세칙에 의하여 졸업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2) (경과조치) 본 세칙 시행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칙을 적용한다.
(3) (기타사항) 본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81401-955, 2003.11.21)
이 시행세칙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365, 2005.12.12)
이 시행세칙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323, 2010.11.24)
이 시행세칙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644, 2012.11.16)
이 시행세칙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시행세칙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실기발표 작성계획서

<table>
<tr><td colspan="2">대학</td><td colspan="2">전공(학과)</td><td>정리번호</td><td></td></tr>
<tr><td>학 번</td><td></td><td>성명</td><td>한글 한문</td><td>성별</td><td></td></tr>
<tr><td>제 목</td><td colspan="5"></td></tr>
<tr><td>요 지</td><td colspan="5"></td></tr>
<tr><td>세 부
계 획</td><td colspan="5"></td></tr>
<tr><td>참 고
문 헌</td><td colspan="5"></td></tr>
<tr><td>공동연구자</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위와 같이 학년도(전기, 후기)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실기 발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또는 대표 인</td></tr>
<tr><td>지도교수의견</td><td colspan="5">지도교수 인</td></tr>
<tr><td>확인</td><td>전공주임교수
학과장</td><td></td><td>비 고</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학 장 귀하</td></tr>
</table>

*기재상의 유의점: 본 계획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지도교수가 보관하고 1부는 학장에게 제출한다

1. 요지란은 연구목적, 연구대상, 범위 및 문제의 배경 등을 요약하여 기술할 것.
2. 세부계획란은 논문의 구성요지, 연구의 방법, 논문의 장, 절, 항 등 완성될 논문의 내용과 형식을 요약하여 기술할 것.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의 경우는 실험실습, 실기발표의 방법, 순서등 완결할 때까지의 과정을 기술 할 것.
3. 공동연구자란은 실험실습,실기발표를 공동으로 할 경우 연구 분담별로 참가자 전원을 기입 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학년도 (전기. 후기) 졸업논문 심사보고서

학과 : 　　　　　　　　학번 : 　　　　　　　　성명 :

논문제목 :

심사요지

심사내역

심 사 위 원			논 문 성 적	심 사 위 원 확 인 란
소 속	직 위	성 명		

심사결과

평균성적점수		판 정 여 부	합격. 불합격

* 평균성적점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위와 같이 논문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공주임교수

학과장 　　　　　　(인)

학 장 　　　　　　(인)

상지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본인은 상지대학교 학생으로서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서약합니다.

첫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직하고 엄정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둘째, 논문 작성, 보고 및 발표 시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중복게재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어떤 연구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20 년 월 일

학과(전공)명 :

지 도 교 수 :

학 번 :

성 명 : (서명)

상지대학교 대학장 귀하